

# 문화재청 일반임기제 공무원(행정 6급) 경력경쟁채용 공고

문화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 일반임기제 공무원(행정 6급)을 경력경쟁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1년 1월 11일  
문화재청장

## 1.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근무예정 부서	비 고
문화재 감정	일반임기제 행정 6급	1명	안전기준과	임용일로부터 2년

※ 일반임기제 :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## 2. 채용대상 직무내용

채용예정분야	주요 업무
문화재 감정	○ 국외 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및 확인 ○ 국내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시 업무 등

## 3. 근거 법령

- 국가공무원법
- 공무원임용령
- 문화재보호법
- 공무원임용시험령
- 공무원임용규칙
-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

## 4. 응시자격 요건

### □ 공통 응시자격요건 [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]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**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**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**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**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】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#### 【「국가공무원법」 부칙 제2조(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)】

제33조제6호의3·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·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## 【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)】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6.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○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

※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

○ 20세 이상인 자(2001. 12. 31. 이전출생자)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

□ 응시요건 :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문화재청	안전기준과

<b>주요 업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외 반출예정 물품의 문화재 여부 감정 및 확인</li> <li>○ 국내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시 업무</li> <li>○ 문화재 여부 감정 및 검색방법 개선 연구</li> <li>○ 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제도 안내 및 홍보</li> <li>○ 유관기관 업무협조(검색요원 문화재 검색요령 교육 등)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	--

<b>필요 역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(공 통 역 량)</b>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</li> <li>○ <b>(직급별 역량)</b> 긍정성, 문제 해결력, 관계 구축력, 의사소통 능력</li> <li>○ <b>(직렬별 역량)</b> 분석력, 집행관리 능력, 조정능력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	--

<b>필요 지식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화재 여부 감정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지식</li> <li>○ 문화재 여부 감정에 필요한 교육 관련 전문지식</li> <li>○ 문화재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지식</li> <li>○ 문화재 국외반출 금지에 대한 이해도 등 관련 지식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	---

<b>관련분야 : 문화재 감정</b>	
<b>응 시 자 격 요 건</b>	<b>경 력</b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민간경력)</li> <li>○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공무원경력)</li> <li>○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민간경력)</li> </ul>
<b>학 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</li> <li>○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○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ul>
[관련경력]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문화재 감정업무 경력 또는	

	<p>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근무경력  [관련학과] 사학, 서지학, 고고학, 민속학, 박물관학, 문화재관리학과 등 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</p>
우대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초과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</li> <li>○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(응시요건 충족 이후 학위, 학위별 차등 우대)  - 사학, 서지학, 고고학, 민속학, 박물관학, 문화재관리학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학위</li> </ul>
가산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자(급수별 점수 차등 부여)</li> </ul>

### <공통>

-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
- 응시자격 요건 중 해당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
  - \*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,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-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### <경력 범위>

- ‘경력’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,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(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  - \*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
  - \* 경력증명서 제출시 발급자 연락처 기재 (전화번호, e-mail)
-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(학위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)
-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(소득금액증명서, 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 가능
  - 폐업회사의 경우 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폐업사실증명서(홈택스 발급 가능)’와 ‘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’ 중 1종은 필수 제출
-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

### <학위 범위>

- ‘학위’ 요건의 ‘관련분야’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
### <우대요건>

-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,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

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

- 관련분야 근무경력(최대 40개월, 개월별 차등우대)
- \* 경력증명서에 의해 당해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하여 평가(경력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,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(석사이상, 학위별 차등배점)
- \* 관련학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
- \* 복수의 학위 소지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

### <가산점>

-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 주관) 3급이상(급수별 차등 우대)
- \* 가산배점비율

1급	2급	3급
3점	2점	1점

- \*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'16.1.1.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,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석적에 한하여 인정)

## 5. 임용예정일,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

- 임용 예정일 : 2021년 3월 예정이나,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
- 채용기간 : 임용일로부터 2년
- ※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-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등에 따라 호봉을 산정,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

## 6. 시험방법

### □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
- 단, 응시인원에 따라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(서류전형기준)에 따라 적극적 서류전형 진행(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3배수 합격자 결정)

※ 서류전형 심사기준

1. 자기소개서
2. 직무수행 계획서

- 3. 우대요건 : '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' 참고
- 4. 가산점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
 ⇒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,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## □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- 평가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
- 합격자 결정방법
  - 시험령 제5조 제3항 및 제30조(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)에 따라 5개 평정요소마다, 각각 상(우수), 중(보통), 하(미흡)로 평정
  -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  - ※ 불합격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(미흡)"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"하(미흡)"로 평정할 때

## 7.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'21. 1. 11.(월) ~ 1. 21.(목)	'21. 1. 19.(화) ~ 1. 21.(목)	'21. 1. 29.(금)	'21. 2. 3.(수) ~ 2. 5.(금) 중 1일	'21. 2. 19.(금)

-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

## 8.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

- 응시원서 접수 : **등기 또는 직접제출**

○ 접수일시 및 시간 : 2021. 1. 19.(화) ~ 1. 21.(목)

[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]

○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: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

※ 방문 접수 시에는 정부청사 출입등록을 위해 사전 연락 필수(☎ 042-481-4647)

※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휴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

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

○ 우편접수 주소 : (우)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
907호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

-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

○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.

- 직무 관련 : 문화재청 안전기준과(☎ 042-481-4924)

- 채용 관련 :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(☎ 042-481-4647)

## □ 제출서류

○ 공통사항(필수제출)

■ 응시원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
※ 정부수입인지 첨부(7천원)

- 가까운 우체국,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[www.e-revenuestamp.or.kr](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)) 등을 통해 발급

-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

■ 응시자 기본서류 1부(별지 제2호 서식)

■ 이력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
■ 자기소개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
■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 제5호 서식)

■ 학위논문요약서 1부(별지 제6호 서식)

■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

■ 주민등록초본 1부 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

○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 ※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

■ 아래의 경력 증빙서류 각 1부(총 3종)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※ 재직기간, 직위, 담당업무 등 기재

-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에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 또는 소득금액증명서(국세청 발급)를 면접 전형 시 제출하여야 함

※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
- 응시요건 및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학위증명서
-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각 1부

**※ 증빙서류 미제출시 경력 등 인정되지 않음**

-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, 사전 전화상담(☎ 042-481-4647)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

**※ 응시자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, 사본제출도 가능함**

## 9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5조의2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**시험에 관한 소명서류**(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, 학위,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)에 **허위사실을 기재**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**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**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**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,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**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

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.

## 10. 기타 사항
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**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 해당, 임용 당일퇴직,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**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**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: 경력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**  
(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)
- 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**누구든지**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**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**를 할 수 있습니다.

◁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▷

인사혁신처 홈페이지([www.mpmgo.kr](http://www.mpmgo.kr)) - 참여민원 - 신고센터 - 인사신문고 -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



## 응시원서작성요령

1.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 또는 워드로 작성합니다.
2.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
3. 『응시원서』는 아래의 <<작성요령>>에 따라 작성합니다.

### <<작성요령>>

- ① 응시직급 :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응시직급의 응시원서 작성
- ② 응시자격 : 응시자격요건 중 반드시 하나를 택하여야 함
- ③ 성 명 : 한글 및 한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.
- ④ 주 소 :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.
- ⑤ 복수국적 해당여부 :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기재한다. 아닐 경우 '해당없음'을 기재한다.
- ⑥ 정부전자수입인지(7천원)로 제출 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 가능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
『※』 표시란 :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.

<별지 제2호 서식>

## 응시자 기본서류

응시직급	일반임기제 행정 6급	성명		생년월일	
------	----------------	----	--	------	--

### ▣ 작성목록(총괄표)

목 록	제출유무
1. 이력서(필수) * 별지 제3호 서식	
2. 자기소개서(필수) * 별지 제4호 서식	
3. 직무수행계획서(필수) * 별지 제5호 서식	
4. 학위논문요약서(필수/선택) * 별지 제6호 서식 * 응시요건에 해당하면 필수 / 우대요건은 선택	
5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필수) * 별지 제7호 서식	
6. 주민등록초본(필수) *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	
7. 경력증명서 1부. (필수/선택) * 응시요건에 해당하면 필수 / 우대요건은 선택	
8. 학위증명서 1부. (필수/선택) * 응시요건에 해당하면 필수 / 우대요건은 선택	

\*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“○” 표시

\* 제출기준(분량, 건수 등)에 위배(과소 또는 과다)될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\*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 미인정

📁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,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(스테플러사용금지)



## 이력서 작성요령

□ 『이력서』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① **응시번호** : 기재하지 않음

② **응시자격요건** :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**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1**

③ **응시자격** :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

### 【경력】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

(예. 통상A분야 경력 요건 중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3년의 경력이 있을시,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9년의 경력은 '나.응시자격'의 경력란에 기입하고,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4년의 경력은 '다.우대요건'의 경력란에 기재)

-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

\*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(근무기관, 근무기간, 직위, 담당업무, 근무형태)

※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**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**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, 서류 제출 이후 퇴사·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직위(급)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(급)를 나누어 기재

-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,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

\* 예시)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
### 【학위】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

-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, 전공·학위종류·취득(예정)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
④ **우대요건** :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

### 【경력】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

-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

\*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(근무기관, 근무기간, 직위, 담당업무, 근무형태)

※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**원서접수 마감일**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, 서류 제출 이후 퇴사·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직위(급)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(급)을 나누어 기재
-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,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
- \* 예시)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: 2년 인정

**【자격증】**

-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, 자격증 명·취득(예정)일·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
- \* 자격증 명·취득(예정)일·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
- \*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

**※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,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**

# 자 기 소 개 서

◎ 자기소개서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○ 작성요령

-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, 지원동기, 생활신조와 가치관, 미래전망, 성품,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, 대인관계,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
- 분량은 총 3매 이내로 작성
-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
-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

# 직무수행계획서

◎ 직무수행계획서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○ 작성요령

-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, 자신의 지식·경험·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, 응시취지, 직무수행방향 및 비전,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게 작성
- 분량은 총 3매 이내로 작성
-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
-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

2021. . .

작성 자 :

(서명)

## 학위논문요약서(석사·박사)

성명	직무분야	응시직급
		일반임기제 행정6급
학위개요	<input type="radio"/> 논문제목 <input type="checkbox"/> 한글명 :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문명 : <input type="radio"/> 심사 년월일 : <input type="radio"/> 취득대학/대학원명(세부전공) : <input type="radio"/> 지도교수 :	
<b>주요내용 요약</b>		
<p>I. 연구목적</p> <p>1.</p> <p>가.</p> <p>1)</p> <p>가)</p> <p>(1)</p> <p>(가)</p> <p>II. 연구내용</p> <p>III. 연구결과의 활용도(구체적으로)</p>		
<p>본 논문요약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1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응시자 : (서명)</p>		

※ 박사 및 석사 학위 건별로 작성 / 주요내용 요약은 3페이지 이내로 작성

※ 논문 표지 및 목차, 서론 사본 각 1부(논문명, 지도교수명, 학위자명 등 명시)

<별지 제7호>

#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## 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.

- (1)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공무원 채용 및 관리
- (2) 개인정보 수집 항목(필수) : 성명, 주민등록번호\*, 휴대폰번호,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· 경력 · 자격 · 면허사항, 4대 보험 자격 득실, 소득금액증명, 외국어성적 · 논문 · 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
- (3)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**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**

**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**

☞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\*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· 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	주민등록번호	「공무원임용시행령」 제34조 제5항

## 2.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(민감정보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(1)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: 공무원 채용 및 관리
- (2) 민감정보 수집 항목 : **범죄경력정보**
- (3)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: **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**

**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**

☞ 민감정보의 수집 ·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

## 3. 복수국적자,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
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,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 · 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.

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.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